

2021년 제1차 임시이사회

임시이사회 회의록

- 일시 : 2021년 3월 26일(금) 16:30~17:30
- 방식 : 비대면 화상회의(Zoom)



마리아의 아들 수도회
사 회 복 지 법 인 바 다 의 별

사회복지법인 바다의 별 2021년 제1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1. 회 의 일 시 : 2021년 3월 26일(금) 16:30~17:30
2. 회 의 방 식 : 비대면 화상회의
3. 임 원 총 수 : 이사총수 8명, 감사총수 2명
4. 참 석 인 원 :
 - 이 사 : 6명 (대표이사 김성일, 이사 최의영, 남철현, 박춘상, 이상신, 권철구)
 - 감 사 : 0명
5. 전차회의록 보고
6. 심 의 안 건 :
 - 제01호. 2020년 사회복지법인 바다의 별 결산 심의 의결 건
 - 제02호. 산하시설 고유번호증 변경(안)심의 의결 건
 - 제03호. 2020년 장애인거주시설 바다의 별 결산 심의 의결 건
 - 제04호. 2021년 장애인거주시설 바다의별 제1차 추가경정 예산 심의 의결 건
 - 제05호. 2020년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몬띠의집 결산심의 의결 건
 - 제06호 2020년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바르나바의 집 결산 심의 의결 건
 - 제07호 2020년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마르따의집 결산 심의 의결 건
 - 제08호 2020년 직업재활센터 바다의 별 결산 심의 의결 건
 - 제09호 2020년 장애인 거주시설 하늘의 별 결산 심의 의결 건
 - 제10호 2020년 노인의료복지시설 몬띠노인요양원 결산 심의 의결 건
 - 제11호 2020년 감사보고서 심의 의결 건
 - 제12호 기타 안건

7. 보고사항 :

1) 장애인 거주시설 바다의 별 취업규칙 변경(안)

8. 기타안건 :

1) 철원 문씨노인요양원 경영정상화 방안(논의) : 입소정원 축소

9. 회 의 내 용 :

1) 성원보고 및 개회 선언

○ 사회자 조성숙 : 참석이사님들의 참석을 확인하고 통신상황의 문제를 점검한 결과 총 재적이사 8명 중 이사 6명이 참여하였음을 확인하였으므로, 법인 정관 제 2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과반수이상 참석으로 성원되었음을 보고하며 이에 대표이사님의 개회선언이 있겠습니다.

○ 대표이사 김성일 : 사회자로부터 전달 받은대로 이사님들과 감사님의 접속이 순조로운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지금부터 2021년 사회복지법인 바다의 별 제1차 임시 이사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 사회자 조성숙 : 이어서 대표이사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2) 대표이사 인사

○ 대표이사 김성일 : 2021년에는 좀 더 희망적일까 했지만 아직은 희망을 논하기에 이른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혼란한 환경에서도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본 법인의 노인 요양원은 이미 백신 접종을 시작하였고, 이제 곧 장애인 시설들도 백신 접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보다는 저희 법인 소속 가족들이 조금은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기에 지금보다는 희망적인 미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시길 당부드리며 인사를 가름합니다.

3) 전차회의록 접수 승인

○ 사회자 조성숙 : 지난 제 4차 임시 이사회는 2020년 12월 11일에 개최하였으며, 이에 대한 전차회의록을 이사님들의 메일로 미리 송부하였고, 모든 이사님들이 이에 대한 내용을 미리 확인하셨습니다. 이에 주요한 안건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제 1호 안건으로 사회복지 법인 바다의 별 제2차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였고, 제 2호 안건은 2021년 사회

복지 법인 바다의별 본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 심의 제 3호 안건은 철원 문씨노인 요양원 시설장 및 사무국장 임명동의안 추진 심의, 제 4호 안건 2020년 장애인 거주시설 바다의 별 제2차 추경 예산안 심의가 있었습니다. 이어 제 5호 안건은 2021년 장애인 거주시설 바다의 별 본예산 심의, 제 6호 안건은 2020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문씨의 집 제 2차 추경 예산안 심의, 제 7호 안건 2021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문씨의 집 본예산 심의, 제 8호 안건 2020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마르따의 집 제 2차 추경 예산안 심의, 제 9호 안건 2021년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마르따의 집 본예산 심의 제10호 2020년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바르나바의 집 추경안 심의, 제11호 2021년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바르나바의 집 본예산 심의, 제12호 2020년 직업재활센터 바다의 별 제2차 추경예산안 심의, 제13호 2021년 직업재활센터 바다의 별 본예산 심의, 제14호 2020년 장애인거주시설 하늘의 별 제2차 추경예산안 심의, 제 15호 2021년 장애인 거주시설 하늘의 별 본예산 심의 제 16호 2020년 노인의료복지시설 문씨노인요양원 제2차 추경예산안 심의, 제 17호 2021년 노인의료복지시설 문씨노인요양원 본예산 심의가 있었습니다.

○ 대표이사 김성일 : 2020년도 제4차 임시이사회 전차회의록 승인 안건을 상정하며 미리 배포한 자료를 참고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사회자의 안건 설명에 대한 이의가 있으십니까?

○ 이사 전원 : '없다'로 답함.

○ 대표이사 김성일 : 이사님들 전원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였기에 전차회의록은 원안대로 접수 승인합니다.

4) 부의안건 상정

○ 사회자 조성숙 : 다음은 부의 안건 상정이 있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 대표이사 김성일 : 본 임시 이사회에서 다룰 심의는 기타안건 포함 모두 12건으로 이사님들은 이미 전달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를 참고하시고 또한 화면으로 보여지는 내용을 기관 담당자들의 설명을 들으신 후 궁금한 점 질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의 안건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 부의안건 심의

제1호. 2020년 사회복지법인 바다의 별 결산 심의 의결 건

- 대표이사 김성일 : 제1호 안건 2020년 사회복지법인 바다의 별 결산 심의 의결 건에 대해 담당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사무국 우현구 부장 : 본 법인의 2020년 결산중 세입은 후원금 수입 예산액은 19,120,000원에서 351,580감소한 18,768,420원이며, 전입금 예산액은 271,866,000원에서 24,287,500감소한 247,578,500원이며, 이월금은 53,775,000원에서 3,317원 감소한 53,771,683원이고, 잡수입은 44,170,000원에서 41,333원 감소한 44,128,667원으로 총 세입은 388,931,000원에서 24,683,730원 감소한 364,247,270원 임. 세입 결산의 주요내용으로는 후원금 수입에서는 비지정후원금이 실수입대비 감소하였고, 몬띠노인요양원 필요 운영비가 감소되어 반영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 수입이 예산대비 실수입이 감소되었음. 잡수입의 경우 예산대비 예금이자 수입 감소분이 반영된 수치임. 세출은 사무비 92,031,000원에서 10,638,788원 감소된 81,392,212원이며, 재산조성비는 2,226,000원에서 1,626,000원 감소한 600,000원이고, 전출금은 282,924,000원에서 26,110,000원 감소한 256,814,000원. 잡지출은 11,675,000원에서 245,720원 감소한 11,429,280원, 예비비 및 기타는 75,000원에서 75,000원 전액 감소되었음. 세출결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무비중 인건비 감액집행과 코로나로 인한 회의참석수당 감소등에 따른 업무추진비 감소, 운영비에서 여비와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운영비등의 실지출 대비 감액 집행되어 반영하였으며, 재산조성비는 자산취득비와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실지출대비 감액 집행되었음. 법인 전출금에서는 몬띠노인요양원 전출금이 감액집행되었으며, 잡지출에서는 보상금 및 사례금등의 실지출 대비 감액 집행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에서는 예산 미사용분이 반영되었음.
- 대표이사 김성일 : 제 1호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이사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 전원 : '없다'로 답하다.
- 대표이사 김성일 : 이사님들의 전원 찬성과 질문이 없으시기에 제 1호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표이사 김성일 : 다음 제2호 안건인 산하시설 고유번호증 변경(안) 심의 의결이 있겠습니다. 담당자분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02호. 산하시설 고유 번호증 변경(안)심의 의결

- 법인사무국 우현구 부장: 법인산하시설 중 장애인거주시설 바다의별, 하늘의 별 공동 생활가정 바르나바의 집은 법인산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유번호증에는 본점으로 되어 있고 대표자 생년월일로 기재되어 있어 금융거래, 행정처리 등에 어려움이 발생되기에 고유번호증을 지점으로 등록하고 법인등록번호를 등재하고자 합니다. 화면에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이사 김성일 : 담당자의 설명을 들으시고 제 2호 의안에 대해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이사님께서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 전원 : '없다'로 답하다.
- 대표이사 김성일 : 제 2호 안건 산하시설 고유 번호증 변경(안) 심의 의결은 원안대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대표이사 김성일 : 다음 제 3호 안건 2020년 장애인거주시설 바다의 별 결산 심의에 대한 의결이 있겠습니다. 담당자분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03호. 2020년 장애인 거주시설 바다의 별 결산 심의 의결 건

- 이근관 원장 : 본 시설의 2020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시설 세입 중 입소비용수입은 116,900,000으로 증감 없이 달성하였으며, 사업수입 중 이용인 프로그램 제작물품 판매수입의 감소에 따라 3,000,000원에서 322,000원 감소한 2,678,000원이었으며, 보조금 수입에서는 2,048,789,000원에서 84,569,140원이 휴직자 인건비 및 시간외 수당 미집행분등의 인건비 감소되어 1,964,219,860원이었음. 후원금 수입에서는 237,848,000원에서 지정후원금 2,727,096원 감소와 비지정후원금 5,447,600원 증가분이 반영되어 2,720,504원이 증가한 240,568,504원으로 예산대비 초과달성하였음. 전입금은 당초 73,814,000원이 모두 달성되었음. 이월금은 34,690,000원에서 3,001원이 감소된 34,686,999원이었고, 잡수입은 46,180,000원에서 1,683,561원 감소한 44,496,439원으로 총 수입분의 결산은 예산 2,561,221,000원에서 83,857,198원 감소한 2,477,363,802원임. 세출은 사무비 1,971,182,000원에

서 106,045,358원 감소한 1,865,136,642원이었음.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 보면 인건비에서 휴직자로 급여가 감소하였고, 기타후생경비에서는 직원단체복 미구입과 야유회 및 하계연수 미실시, 코로나로 인한 회의비 감소 등이 반영되었고, 운영비에서는 수용비 및 수수료 실지출 감소, 공공요금 감소, 제세공과금 감소, 차량비 감소, 직원교육비 감소등이 반영되어 예산대비 94.6%가 집행되었음. 재산조성비는 250,231,000원에서 46,995,820원이 감소된 203,235,180원이 집행되었으며, 이에 대한 주요내용은 시설비에서 테크공사 및 전기설비 공사 미실시오 인한 감소, 자산취득비에서 컴퓨터 및 회의용 테이블 미구입에 따른 감소, 시설장비 유지비는 실지출 대비 감소분이 반영되어 재산조성비는 예산대비 81.22%가 집행되었음. 사업비는 339,508,000원에서 23,066,160원이 감액된 316,441,840원이며, 이에 대한 주요내용은 생계비 실지출 대비 반영되어 감액, 수용기관경비 실지출대비 감액, 의료비,연료비등이 실지출대비 감액되었고, 프로그램 사업비는 코로나로 인한 외부 활동 프로그램비가 감소되어 예산의 81.64% 집행되어 사업비 전체는 예산대비 93.2%의 집행률을 보였음. 예비비 및 기타에서는 300,000원에서 4,736,754원이 증액된 5,036,754원이며, 이에 대한 주요내용은 보조금 인건비 반환금의 실지출 대비 증액에 따른 것으로 예산대비 1,678%가 집행되어 총 세출 총액은 2,561,221,000원에서 171,370,584원 감액된 2,389,850,416원 임을 설명 함.

- 대표이사 김성일 : 제 3호 안건 2020년 장애인 거주시설 바다의 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이사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 최의영 : 없음을 답하다.
- 이사 전 원 : 이사 전원 동의 의견임을 말하다.
- 대표이사 김성일 : 제 3호 안건은 원안대로 승인 처리됨에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호 2021년 장애인거주시설 바다의 별 1차 추가경정 예산 심의가 있겠습니다. 담당자는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04호. 2021년 장애인거주시설 바다의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심의 의결

- 원장 이근관 : 본 시설의 추경 예산 중 세입에서 사업수입은 프로그램 물품 판매수입 200,000원 증액하였고, 보조금 2,252,956,000원에서 139,142,000원 감액되어 139,142,000원이며, 이에 대한 내용은 생계비에서 3,062,000원 증액, 인건비 보조금 내시액 기준으로 산출하여 144,231,000원 감액, 운영비 11,898,000원 증액, 7종 인건

비 내시액 기준 감소로 9,871,000원 감액되었고, 후원금수입은 123,076,000원에서 태권도 프로그램 외부지원이 확정되어 3,210,000원 증액된 126,286,000원이며, 이월금 76,361,000원에서 실수입이 반영되어 11,155,000원이 증액된 87,516,000원이며, 잡수입은 53,645,000원에서 920,000원이 증액된 54,565,000원으로 그 내용은 불용품 매각대 200,000원 증액, 주방보조원 채용에 따른 식대 720,000원 증액이 반영되었음 이에 총 세입은 2,639,138,000원에서 123,657,000원 감액된 2,515,481,000원으로 조정되었음.

세출에서 사무비 2,150,981,000원에서 90,465,000원 감액된 2,060,516,000원으로 조정 감액되었고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인건비에서 보조금 내시액 기준 산출로 인한 155,714,000원 감액, 운영비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 증액, 직원식대를 생계비 계정에서 기타 운영비 계정으로 대체하여 편성, 차량비 증액 등을 반영하였고, 재산조성비는 52,641,000원에서 11,898,000원이 증액된 64,539,000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시설비에서 비품구입으로 난방기구, 컴퓨터 구입 등의 6,509,000원 증액과 편의시설공사비 5,389,000원 증액이 반영되었으며, 사업비는 435,221,000원에서 45,093,000원이 감액 조정되어 390,128,000원이며, 이는 직원 식대를 생계비 계정에서 기타운영비 계정으로 대체하였고, 수용기관경비 증액, 의약품비 증액, 생계비 증액, 자립지원 프로그램비 증액 등이 반영되었음. 예비비 및 기타는 295,000원에서 3,000원 증액된 298,000원으로 조정되어 총 세출은 2,639,138,000원에서 123,657,000원 감액된 2,515,481,000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음을 설명 함.

- 대표이사 김성일 : 본 제 4호 안건인 2021년 장애인 거주시설 바다의 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심의에 있어 설명을 들은 바 질문이나 의의가 있으신지요?
- 이사 전원 : '없다'로 답하다.
- 대표이사 김성일 : 이에 제 4호 안건 2021년 장애인거주시설 바다의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심의는 원안대로 처리됨을 선포하며, 이어서 제5호 안건을 담당자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05호. 2020년 공동생활가정 몬띠의 집 결산 심의 의결

- 원장 이근관 : 본 기관의 결산은 세입에서는 69,958,000원에서 826,241원 감액된 69,131,759원 임. 먼저 입소비용에서 코로나로 인해 이용인의 가정학습으로 수입이 감액되어 입소비용 수입이 9,000,000원에서 1,000,000원 감액된 8,000,000원이며, 보

조금 수입은 57,237,000원에서 인건비중 시간외 수당과 사회보험료등의 213,510원 감액되어 57,023,490원이며, 후원금 수입은 800,000원에서 400,000 증액되어 1,200,000원 임. 이월금은 2,044,000원에서 1,766원 감액된 2,042,234원이며, 잡수입은 877,000원에서 10,965원 감액된 866,035원 임. 세출은 총 69,958,000원에서 4,881,132원 감액된 65,076,868원임. 사무비는 56,564,000원에서 인건비의 실지출 대비 감액, 업무추진비 실지출 감액, 운영비 실지출 대비 감액들을 반영하여 예산대비 97.79%를 집행하였고, 재산조성비는 100,000원에서 시설장비유지비의 실지출 6,060원 감액된 93,940원이며, 사업비는 13,257,000원에서 3,602,760원 감액된 9,654,240원임. 이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생계비 감액, 수용기관경비 감액, 피복비 감액, 의료비 감액, 연료비 감액, 코로나로 인한 외부 활동비 감소에 의한 프로그램비 감액 등이 반영되었음. 예비비 및 기타에서는 37,000원에서 25,135원 감액된 11,365원이었음.

- 대표이사 김성일 : 본 기관의 2020년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는데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지요?
- 이사 전원 : '없다'로 답하다.
- 대표이사 김성일 : 이에 제5호 안건 2020년 공동생활가정 문씨의 집 결산에 대한 심의는 원안대로 처리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담당자께서는 제6호 안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06호. 2020년 공동생활가정 바르나바의 집 결산 심의 의결

- 원장 이근관 : 본 기관의 세입 결산은 72,824,000원에서 440,970원 감액된 72,383,030원이며,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보조금 수입 55,979,000원에서 396,010원 감액된 55,582,990원이며 이는 인건비에서 시간외 수당, 사회보험 등의 감액 임. 후원금 수입 440,000원에서 40,000원 감액되어 400,000원이며, 이월금 수입은 3,606,000원에서 2,852원 감액되어 3,603,148원 임. 세출 결산은 72,824,000원에서 4,588,475원 감액된 68,235,525원이며, 이에 대한 내용은 사무비 54,784,000원에서 1,697,110원 감액된 53,086,890원으로 실지출 대비 감액 집행 되었고, 재산조성비 1,300,000원에서 316,060원 감액된 983,940원임. 사업비에서는 16,721,000원에서 2,568,770원 감액된 14,152,230원으로 코로나로 인한 외부활동 감소와 실지출대비가 반영되었음. 예비비 및 기타는 19,000원에서 6,535원 감액된 12,465원으로 보조금 인건비와 예금이자 집행 잔액 반환금이 발생하였음을 설명함.

- 대표이사 김성일 : 2020년 공동생활가정 바르나바의 집 결산에 대한 질문이나 이의가 있으신지요?
- 이사 전원 : '없다'로 답하다.
- 대표이사 김성일 : 제 06호 안건 2020년 공동생활가정 바르나바의 집 결산 심의는 원안대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하며, 이어서 담당자는 제7호 안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07호. 2021년 공동생활가정 마르따의 집 결산 심의 의결

- 원장 이근관 : 본 기관의 세입 결산은 73,794,000원에서 836,645원 감액된 72,957,355원 임. 이중 입소비용 수입은 12,000,000원에서 125,000원 감액된 11,875,000원이며, 이는 코로나로 인한 가정학습으로 수입이 감소되었음. 보조금 수입은 53,867,000원에서 333,160원 감액된 53,533,840원으로 시간외 수당,사회보험비 감액 등이 반영되었고, 후원금 수입은 500,000원에서 100,000원 감액된 400,000원이며, 이월금은 4,123,000원에서 1,992원 감액된 4,121,008원 임. 잡수입은 3,304,000원에서 276,493원 감액된 3,027,507원 임. 세출 결산은 73,794,000원에서 6,054,863원 감액된 67,739,137원임.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사무비가 52,114,000원에서 코로나로 인한 회의비 감소와 시간외 수당, 사회보험비 미집행에 따른 3,212,363원 감액된 48,901,637원임. 재산조성비는 3,199,000원에서 실지출 대비 127,860원 감액되어 3,071,140원 임. 사업비는 18,397,000원에서 외부 프로그램 감소 등으로 인해 2,654,360원 감액된 15,742,640원 임. 예비비 및 기타는 84,000원에서 60,230원 감액된 23,720원 임을 설명함.

- 대표이사 김성일 : 제 7호 의안 2020년 공동생활가정 마르따의 집 결산에 대한 설명에 질문이나 이의가 있으신지요?
- 이사 전원 : '없다'로 답하다.
- 대표이사 김성일 : 이에 제7호 안건 2020년 공동생활가정 마르따의 집 결산 심의는 원안대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하며, 다음 제8호 안건을 담당자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08호. 2020년 직업재활센터 바다의 별 결산 심의 의결

○ 원장 오귀철 : 본 센터의 2020년 결산을 말씀드리고자 함. 먼저 세입 결산은 총 810,080,364원에 3,866,016원 증액된 813,946,380원임. 이중 사업수입은 138,426,000원에 308,810원 증액된 138,734,810원으로 이는 현수막 사업 수입이 예산대비 증가했기 때문임.

보조금 수입은 544,719,720원에서 변동 없이 544,719,720원이며, 후원금 수입은 3,800,000원에서 150,000원 증액된 3,950,000원이고, 전입금은 30,000,000원에서 변동 없이 30,000,000원이며, 이월금은 57,563,644원에서 변동 없이 57,563,644원임. 잡수입은 35,571,000원에서 3,407,206원이 휴업일수 변동에 따른 고용유지지원 신청금 증가로 증액되어 38,978,206원으로 조정 편성되었음. 세출 결산은 810,080,364원에서 35,640,828원 감액된 774,439,536원이며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사무비에서 인건비의 시간외 수당, 퇴직적립금의 감액, 업무추진비 중 코로나로 인한 회의비 감소, 운영비 중 여비, 공공요금, 차량비, 제세공과금, 기타운영비의 감소로 인한 실지출 대비 감액이었으며, 재산조성비는 시설비에서 실지출 대비 감소로 감액되었음. 사업비에서는 운영비에서 작업복 미구입에 따른 감소와 교육비 감소, 사업비 중 코로나로 인한 사업운영비와 자재구입비 감소 장기 휴관에 따른 프로그램 미진행에 따른 프로그램 사업비 감소 등이 있었음. 예비비 및 기타에서는 보조금 인건비 봉집행 잔액과 예금이자 반납분의 실지출 대비 감액임.

○ 대표이사 김성일 : 2020년 직업재활센터 바다의 별 결산에 설명을 들으시고 질문이나 이의가 있으신지요?

○ 이사 전원 : '없다'로 답하다.

○ 대표이사 김성일 : 그럼 제8호 안건인 2020년 직업재활센터 바다의 별 결산 심의 의결을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선포하며, 이어서 다음 제9호 안건을 담당자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09호. 2020년 장애인 거주시설 하늘의 별 결산 심의 의결

○ 원장 조성숙 : 본 기관의 세입 결산은 1,732,730,000원에서 7,864,341원 증액된 1,740,594,341원이며 그 주용 내용은 입소비용 수입은 42,000,000원에서 변동 없이

42,000,000원이며, 보조금 수입은 1,502,333,000원에서 시간외수당 미집행에 따른 4,688,950원이 감액된 1,497,644,050원이며, 후원금 수입은 92,480,000원에서 지정 후원금 150,006원 감소, 비지정후원금 12,290,940원 증가되어 104,620,934원이며, 전입금은 30,000,000원이 변동 없이 30,000,000원임. 이월금 38,571,000원은 천단 위 절삭에 의한 3,043원이 감액된 38,567,957원이며, 잡수입은 27,346,000원에서 사회복지무요원 식대수입 증가와 예금이자 수입 감소분이 반영되어 415,400원 증액된 27,761,400원임. 세출 결산은 총 1,732,730,000원에서 42,353,408원이 감액된 1,690,376,592원이며,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사무비 1,336,646,000원 중 인건비에서 시간외 수당 미집행, 종사자 워크샵 미실시 등으로 감액되었고, 업무추진비는 회의비 미집행으로 감액. 운영비에서는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감액 공공요금 감액. 제세공과금 감액, 차량비 감액, 기타운영비 등이 실지출 대비 19,556,696원이 감액되어 1,317,089,304원임. 재산조성비 28,341,000원은 자산취득비와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실지출 대비 95,520원 감액되어 28,245,480원이고, 사업비 362,434,000원에서 운영비 중 생계비와 수용기관경비, 의료비, 연료비 등이 실지출 대비 감액되었고, 사업비는 외부활동 감소로 인해 프로그램비 등 22,678,833원이 감액되어 339,755,167원임. 예비비 및 기타에서 5,309,000원에서 예금이자 수입 미집행에 따른 22,359원이 감액되어 5,286,641원임을 설명함.

- 대표이사 김성일 : 본 건의 설명에 질문이나 이의가 있으십니까?
- 이사 전원 : '없다'로 답하다.
- 대표이사 김성일 : 그림 제 9호 의안인 2020년 장애인 거주시설 하늘의 별 결산 심의는 원안대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하며, 이어서 제10호 안건을 담당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호. 2020년 노인의료복지시설 몬띠노인 요양원 결산 심의 의결

- 원장 여운암 : 본 기관의 세입 결산은 총 1,487,019,000원에서 31,105,444원이 감액된 1,455,916,556원임. 이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입소자부담금수입은 203,061,000원에서 678,910원 감액된 202,382,090원으로 병원 장기 입원자가 증가하면서 수입이 감소되었음. 과년도 수입은 25,000,000원에서 1,162,840원이 입소자 부담금 장기미납으로 감소되어 23,837,160원임. 보조금 수입은 44,311,000원에서 기

초생활수급자 장기 입원자 퇴소로 인한 감소분 2,618,270원이 반영된 41,692,730원이며, 후원금 수입은 7,000,000원에서 1,790,000원이 춘천교구 바자회취소에 따른 실수입대비 감소로 5,210,000원이며, 요양급여 수입은 978,814,000원에서 야간 가산금 증가분 4,984,060원이 반영되어 983,798,060원으로 편성되었음. 전입금은 149,110,000원에서 26,110,000원이 예산과다 책정에 따른 감소분이 반영되어 123,000,000원 임. 이월금은 34,098,000원에서 실수입대비 4,948원이 감액된 34,096,052원이며, 잡수입은 45,625,000원에서 직원식대 실수입 반영과 예금이자 조정 등이 반영되어 3,724,536원 감액된 41,900,464원 임.

세출 결산은 총 1,487,019,000원에서 72,865,968원이 감액된 1,414,153,032원 임.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면 사무비 1,243,467,000원에서 51,023,396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인건비에서 휴직자급여 및 각종수당 미집행, 업무추진비에서 회의비 감소, 운영비에서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제세공과금, 차량비, 기타운영비 중 집합교육 및 직원회식비 감소 등이 반영 되어 1,192,443,604원 임. 재산조성비 23,214,000원에서 1,360,050원이 실지출 대비 감소하여 21,853,950원이며, 사업비는 216,265,000원에서 생계비, 수용기관경비, 의료비, 외부프로그램비 감소로 인한 20,410,612원이 감액된 195,854,388원임. 잡지출은 변동없이 4,000,000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 73,000원은 보조금 인건비 예금이자 반환금 71,910원이 감액되어 1,090원임을 설명 함.

- 대표이사 김성일 : 본 안건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문이나 의의가 있으십니까?
- 이사 전원 : '없다'로 답하다.
- 대표이사 김성일 : 제10호 안건인 2020년 몬터 노인요양원 결산 심의 의결을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 이사 이상신 : 대표이사님 제가 잠깐 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 의안이 상정되게 되어 있으나, 이는 기관의 결산을 하시기 전에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과 감사님의 보고가 있어야 하나 보고서만을 읽는 방법으로 시행되더라도 순서는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대표이사 김성일 : 이사님들께 양해말씀 드리며 감사님의 감사보고서는 이상신 이사님의 지적과 같이 먼저 시행되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해 다음부터는 의견을 참고하여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님의 보고서를 사회자께서는 대신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호. 2020년 감사보고서 심의 의결

- 사회자 조성숙 : 감사님을 대신하여 감사보고서를 낭독하겠습니다. 본 법인과 그 산하시설의 내부 감사를 실시한 결과 외부 감사가 회계 감사를 마친 상황이었고 그에 대한 의견을 코멘트 해주신 걸로 알고 있으며, 그 결과를 보니 법인과 각 시설의 감사를 함에 문제 될 것이 없이 모두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대표이사님의 말씀처럼 각 시설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를 마치는 데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표이사 김성일 : 본 감사보고서를 듣고 질문이나 의의가 있으십니까?
- 이사 전원 : '없다'로 답하다.
- 대표이사 김성일 : 그럼 제11호 안건인 2020년 감사보고서에 대한 심의 의결을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에 모든 안건에 대한 심의는 마치고 다음은 보고사항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바다의 별 취업규칙 변경 안에 대한 설명을 담당자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사항 : 장애인 거주시설 바다의 별 취업규칙 변경(안)

- 원장 이근관 : 본 시설의 취업규칙에 변경사항이 있어 이사회에 보고하고 합니다. 설명 후 이사님들의 의견과 질문 받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전	변경후
제2장 인사	제2장 인사
제19조 【육아휴직】 ① 시설은 직원이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 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시설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직원 (2018.12.11 신설) 2.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의한 육아휴직을 포함한다) 중인 직원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제19조 【육아휴직】 ① 시설은 직원이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 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시설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직원 (2018.12.11 신설) 2.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의한 육아휴직을 포함한다) 중인 직원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2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p>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다.</p> <p>③ 시설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동안은 당해 직원을 해고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시설은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며, 육아휴직기간은 승진, 승급, 퇴직 급여 산정 등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한다.</p>	<p>③ 시설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동안은 당해 직원을 해고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시설은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며, 육아휴직기간은 승진, 승급, 퇴직급여 산정 등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한다.</p>
<p>제21조의1 【가족돌봄휴가】</p> <p>①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학교행사 참석 등 자녀양육을 사유로 근로자가 1일 단위로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p> <p>1. 가족의 범위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p> <p>2. 휴가기간중 임금 : 무급</p> <p>3. 지원기준 : 근로시간 6개월 이상인자 (2020.1. 1. 시행)</p>	<p>제21조의1 【가족돌봄휴가】</p> <p>①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학교행사 참석 등 자녀양육에 필요한 경우 사용하는 휴가로 재난 위기(코로나등)시 가족돌봄휴가를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p> <p>(1일단위 연간10일, 한부모가족의 경우 15일)</p> <p>1. 가족의 범위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p> <p>2. 휴가기간중 임금 : 무급</p> <p>3. 지원기준 : 근로시간 6개월 이상인자 (2020.9. 8. 개정)</p>
<p>제3장 복무</p>	<p>제3장 복무</p>
<p>제29조 【근로시간】</p> <p>① 직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장과 직원이 합의한 경우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휴게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여기서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2018.12.11 신설)</p> <p>②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 직원의 연장근로시간은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p> <p>③ 15세 이상 18세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2018.12.11 신설)</p> <p>④ 제1항에 불구하고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의 연장시간에 더하여 1주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행2021.7.1, 2022년까지 유예규정)</p>	<p>제29조 【주52시간 근로제】</p> <p>① 직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장과 직원이 합의한 경우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여기서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2018.12.11 신설)</p> <p>② 평일소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휴일 근로시간 12시간을 합하여 주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p> <p>③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 직원의 연장근로 시간은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p> <p>④ 15세이상 18세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2018.12.11 신설)</p> <p>⑤ 제1항에 불구하고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의 연장시간에 더하여 1주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1. 제1항의 연장되는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그 사유 및 그 시간</p> <p>2. 대상 근로자의 범위<2018.12.11.신설></p>	<p>(시행2021.7.1., 2022년까지 유예규정)</p> <p>1. 제1항의 연장되는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그 사유 및 그 시간</p> <p>2. 대상 근로자의 범위<2018.12.11.신설></p>
<p>(신설)</p>	<p>제30조1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p> <p>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29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29조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29조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p> <p>1. 대상 근로자의 범위</p> <p>2.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p>
	<p>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p> <p>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p> <p>③ 사용자는 제1항 제3호에 따른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단위기간 내에서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제1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일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15세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제30조2 【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① 사용자는 제30조 및 제30조의 1에 따른 단위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그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단위기간중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제60조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21. 4. 6.신설)
제39조 【유급휴일】 시설은 주유일 이외에 유급 휴일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단, 생활지도원, 취사원등 일부 직원의 휴일에 대해서는 개별 근로계약으로 정한다. 1. 근로자의 날 2. 관공서 공휴일 3. 기타 정부 또는 시설에서 임시휴일로 정한 날	제39조 【유급휴일】 시설은 주유일 이외에 유급 휴일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단, 생활지도원, 취사원등 일부 직원의 휴일에 대해서는 개별 근로계약으로 정한다. 1. 근로자의 날 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 3. 시설에서 임시휴일로 정한 날 4. 정부에서 정하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제2장 인사 제 19조 육아휴직 2항에서 1회에 한여 분할 사용을 2회에 나누어 사용으로 변경합니다.

제21조의 1 가족돌봄휴가 1항에서 자녀양육을 사유로 근로자가 1일 단위로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를 자녀양육에 필요한 경우 사용하는 휴가로 재난 위기, 코로나 등 가족 돌봄 휴가를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로 또한 1일 단위 연간 10일, 한부모 가족의 경우 15일로 변경합니다.

제3장 복무 제29조 근로시간을 제29조 주52시간 근로제로 변경합니다.

이어 신설된 2항 평일소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 휴일 근로시간 12시간을 합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를 삽입합니다.

이어 제30조 1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신설하여 1항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29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29조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29조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천재 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3항 사용자는 제1항 제3호에 따른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4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 지변,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단위기간 내에서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제1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일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5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항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0조 2 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을 신설하고자 하며 1항 사용자는 제30조 및 제30조의 1에 따른 단위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그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단위 기간중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제60조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21. 4. 6.신설)의 내용이다.

또한 제3장 복무의 제 39조 유급휴일에서 2. 관공서 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로 3. 기타 정부 또는 시설에서 임시휴일로 정한 날을 3. 시설에서 임시휴일로 정한 날 4. 정부에서 정하는 공직 선거법상 선거일로 변경합니다.

○ 대표이사 김성일 : 지금까지 들으셨던 보고 사항에 대해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까?

○ 이사 전원 : '없다'로 답하다.

○ 대표이사 김성일 : 더 이상의 질문이나 의견이 없으신 관계로 보고 사항에 대한 내용은 마치겠습니다.

10. 기타 안건

제12호. 철원 몬띠노인요양원 경영정상화 심의
(입소 어르신 정원 축소)

○ 대표이사 김성일 : 지금부터는 기타 토의를 진행할 것이 있으신 이사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사 최의영 : 몬띠노인요양원 결산을 보니 법인에서 지원하는 전출금의 규모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된다. 2019년에는 1억1천만원 이상 지원되었고, 2020년에도 1억2천만원 이상지원되었다. 운영상의 문제는 많겠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해야하는가? 이대로 유지하는 것이 더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정원을 조정하여 운영에 부담을 줄이고 내실을 다지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대표이사 김성일 : 최의영 이사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여러 이사님들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 이 사 이상진 : 요양원의 운영이 어려워 정원을 조정한다면 고용되어 있는 종사자들의 고용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 대표이사 김성일 : 몬띠 요양원 원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 장 여운암 : 현재 저희 요양원의 가장 큰 문제가 인력수급의 어려움입니다.

그에 따라 어르신들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종사자 고용문제 해결이 어렵겠지만, 입소하신 어르신들은 3개월~6개월 정도면 자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종사자 수급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대표이사 김성일 : 일단 요양원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입소어르신 정원축소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다음 이사회 때 보고받는 것이 어떨지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 이 사 최의영 : 동의합니다.

다음 이사회에서 정원축소에 따른 결과를 보고받도록 합니다.

- 이 사 광춘상 : 제청합니다.
- 대표이사 김성일 : 최의영 이사님의 의견대로 다음 이사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신가요?
- 이사전원 : '없다'로 답하다.
- 대표이사 김성일 : 그럼 몬띠노인요양원 정원축소를 결정하였으며, 다음 이사회에서 정원축소에 따른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1. 기타 안건


- 대표이사 김성일 : 또 다른 사항 있으신지요? 없으시면 폐회할 것을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전원 : '없다'로 답하다.
- 이 사 최의영 : 2021년 제1차 임시이사회 폐회를 동의하다.
- 이 사 광춘상 : 최의영 이사의 폐회동의에 재청하다.
- 이 사 전원 : 폐회를 찬성하다.
- 대표이사 김성일 : 이상으로 2021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상황이 좋아져서 대면회의로 진행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대면 화상회의(ZOOM)에 참석한 임원은 위 기록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인감 날인함.

2021년 3월 26일


사회복지법인 바다의 별

대표이사 : 김 성 일 (인) 

이 사 : 최 의 영 (인) 

이 사 : 남 철 현 (인) 

이 사 : 곽 춘 상 (인) 

이 사 : 이 상 신 (인) 

이 사 : 권 철 구 (인) 

